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2년 3월 일

제안자 : 류한철 의원외 3인

1. 제안이유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 국가유공자등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는 것을 전액 면제할 수 있게 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장애인등록증과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고자 함. (안 제3조 제3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고,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② (생략) ③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이나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및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고,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류한철 의원외 3인 발의)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에우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 기존 주차요금 50퍼센트를 정감할 수 있는 것을 전액 면제할 수 있게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생활안정, 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장애인 등록증과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3. 검토의견

가. 개정안 발의 취지

- IMF경제위기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등 사회안전망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거동불편자중 상당수가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고,
- 특히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장애인들에 대하여는 제도적으로 생활안정 지원과 생활시설·직업재활 등 복지시설을 지원 육성하면서도 사회적으로는 냉소적인 시각이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 장애로 인한 거동 불편자에 대하여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기존 50퍼센트를 정감토록 한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하는 개정조례의 발의를 계기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하는 법 시민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나. 주차요금의 전액 면제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안 제3조제3항)

-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 제3조제3항 중 장애인 등록증과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적합성이나 내용 타당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다. 집행부 및 관련단체 의견청취 내용

< 집행부 >

제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와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개진한 바 "경기도관내 31개 시·군중 24개 시·군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 내지 50퍼센트를 경감하고 있으며, 도로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시간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주시도 2시간이내의 주차에 대하여는 전액면제하고 이후 주차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50퍼센트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장애인협회 및 국가유공자협회 >

1. 장애인협회

의원발의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공문으로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단, 2시간 이내의 주차에 대하여 면제하고 2시간 경과시 50퍼센트 감면에 대하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느린 활동을 감안하여 시간구애 없이 면제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구두 요청이 있었음.

2. 국가유공자협회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광지(임진각·통일동산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는 제외된 것 같아 포함시켜 줄 것을 요망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이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요구됨.